

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20의5] <신설 2023. 9. 1.>

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(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)

1.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

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.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.

$$\text{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} = \left(1 - \frac{\text{감축계수}}{100}\right) \times \text{기준선 값}$$

비고

1.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. 이 경우 감축계수가 특정 범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에 따라 최소값 및 최대값 사이의 감축계수를 선형적으로 적용하며,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적을수록 낮은 감축계수 값을 적용한다.

선박 종류	재화중량톤수(DWT)	감축계수
산적화물선	20만톤 이상	15
	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	20
	1만톤 이상 2만톤 미만	0 ~ 20
가스운반선	1만5천톤 이상	30
	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	20
	2천톤 이상 1만톤 미만	0 ~ 20
유조선등	20만톤 이상	15
	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	20
	4천톤 이상 2만톤 미만	0 ~ 20
컨테이너선	20만톤 이상	50
	1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	45
	8만톤 이상 12만톤 미만	35
	4만톤 이상 8만톤 미만	30
	1만5천톤 이상 4만톤 미만	20
	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	0 ~ 20
일반화물선(별표 20의 2 제1호마목에 따른 일반화물선을 말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	1만5천톤 이상	30
	3천톤 이상 1만5천톤 미만	0 ~ 30

다)		
냉동화물운반선	5천톤 이상	15
	3천톤 이상 5천톤 미만	0 ~ 15
겸용선	2만톤 이상	20
	4천톤 이상 2만톤 미만	0 ~ 20
로로화물선 (차량운반선)	1만톤 이상	15
로로화물선 (로로화물수송유니트 운반선)	2천톤 이상	5
	1천톤 이상 2천톤 미만	0 ~ 5
로로여객선	1천톤 이상	5
	250톤 이상 1천톤 미만	0 ~ 5
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	1만톤 이상	30
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	국제총톤수 8만5천톤 이상	30
	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8만5천톤 미만	0 ~ 30

2. 비고 제1호의 표에서 “비전통 추진방식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,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하며,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.

3.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기준선 값은 별표 20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선 값과 같다.

2.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

- 가.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산적화물선
- 나. 재화중량톤수 2천톤 이상 가스운반선
- 다.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유조선등
- 라.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컨테이너선
- 마.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일반화물선
- 바.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냉동화물운반선
- 사.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겸용선
- 아.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로로화물선(차량운반선)
- 자. 재화중량톤수 1천톤 이상 로로화물선(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)
- 차.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
- 카.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(LNG)운반선

타.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